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신고대상 규모]

배출시설 종류	허가대상	신고대상
돼지	축사 1,000㎡ 이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	50㎡ 이상 1,000㎡ 미만 (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50㎡ 이상 500㎡ 미만)
소	축사 900㎡ 이상 또는 운동장 450㎡ 이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200㎡ 이상 450㎡ 미만 (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100㎡ 이상 200㎡ 미만)
젖소	축사 900㎡ 이상 또는 운동장 2,700㎡ 이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	축사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300㎡ 이상 2,700㎡ 미만 (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축사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300㎡ 이상 1,350㎡ 미만)
말	면적 900㎡ 이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	100㎡ 이상 900㎡ 미만 (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100㎡ 이상 450㎡ 미만)
닭·오리·양	면적 3,000㎡ 이상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
사슴	-	200㎡ 이상
개	-	60㎡ 이상
방목 사육 시설	-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사슴 50마리 이상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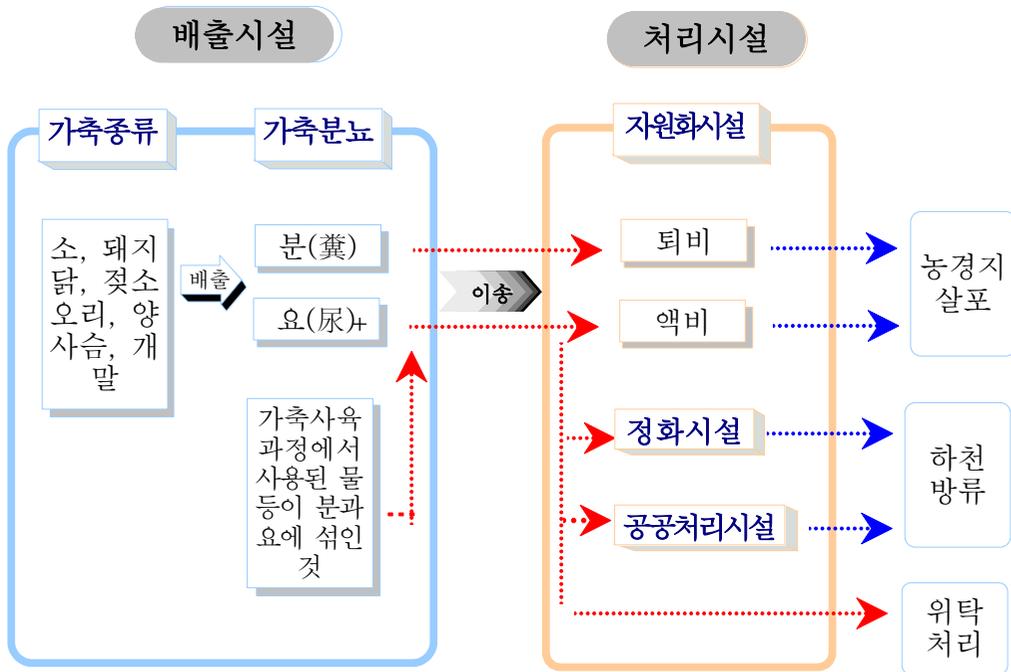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해당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  
어떻게 하여야 할지...

#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운영·관리시 준수사항

본 자료는 가축을 사육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알기쉽게 정리하여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고 사업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지역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의 발생 및 처리



### 용어설명

- ◆ **가 축 :** 소, 돼지, 말, 닭, 젓소, 오리, 양, 사슴, 개
- ◆ **가축분뇨 :** 가축의 분(糞), 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과 요에 섞인 것
- ◆ **배출시설 :**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 ◆ **자원화시설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 시설
- ◆ **퇴 비 :**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
  - ※ 단,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액비도 동일)
- ◆ **액 비 :**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 ◆ **정화시설 :**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
  - ※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 : 생물학적 방법(호기성, 혐기성 또는 혐기성), 물리·화학적방법, 두 방법을 조합한 방법
- ◆ **처리시설 :** 자원화시설과 정화시설
- ◆ **공공처리시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 ◆ **생산자단체 :**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구 분 (법조항)	준 수 사 항	위반시 조치사항		
		벌 칙 (징역/벌금)	행정명령 (1차위반시)	과태료
가축 분뇨 처리 의무 (제10조)	<p><b>&lt;미처리 가축분뇨 공공수역 배출금지&gt;</b>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공수역 : 하천, 호소, 향만, 연안해역,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p>	5년/5천만원 (무허가) 2년/2천만원 (허가) 1년/1천만원 (신고) 300만원 (시설설치자 외)	-	-
허가 및 신고 (제11조)	<p><b>&lt;설치허가 및 신고 (관련기관 : 시·군·구청)&gt;</b>                      ◦ 무허가/거짓, 부정하게 허가 받은 자                      ◦ 미신고/거짓, 부정하게 신고한 자                      ※ 허가 및 신고대상 규모 : 9페이지 참조</p>	2년/2천만원 1년/1천만원	허가취소 -	-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11조)	<p><b>&lt;변경허가대상&gt;</b>                      ◦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 또는 가축분뇨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                      ◦ 준공검사 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변경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 소재지 변경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변경</p> <p><b>&lt;변경신고대상&gt;</b>                      ◦ 허가를 받은 자로서                      - 배출시설의 규모를 50/100미만 증설                      - 처리시설 규모 변경,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 처리시설의 처리공법 변경(처리방법은 유지)                      - 가축분뇨를 위탁처리로 변경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초지나 농경지 면적 또는 소재지 변경                      ·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그 계약내용 중 위탁량을 변경</p>	2년/2천만원	-	-

구 분 (법조항)	준 수 사 항	위반시 조치사항		
		벌 칙 (징역/벌금)	행정명령 (1차위반시)	과태료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가축 종류변경(가축종류 변경하더라도 허가대상)</li> <li>-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 폐쇄</li> </ul> <p>◦ <b>신고를 한 자로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 규모 또는 소재지 변경</li> <li>- 처리시설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 변경</li> <li>-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li> <li>-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초지나 농경지 면적 또는 소재지 변경                              ·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                              그 계약내용 중 위탁량 변경</li> <li>- 사육가축 종류변경(가축종류 변경하더라도 신고대상)</li> <li>-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 폐쇄</li> </ul>	-	-	100만원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설치 (제12조)	<p><b>&lt;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gt;</b>                      ◦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는 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여야 한다.                      ※ 예외 : 전량 위탁하는 경우                      -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 유입, 위탁                      - 재활용신고자에게 전량 위탁                      -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p> <p>◦ 시설설치자 중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예 외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만을 정화·처리하는 경우                      -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않아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p>	2년/2천만원 (허가) 1년/1천만원 (신고)	처리시설 설치명령 처리시설 설치명령	- -

구 분 (법조항)	준 수 사 항	위반시 조치사항		
		벌 칙 (징역/벌금)	행정명령 (1차위반시)	과태료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설치 기준 (제12조의2)	<p>&lt;공 통&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조물의 천정·바닥 및 벽은 누수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li> <li>2. 구조물은 토압·수압·자체중량, 그 밖의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li> <li>3. 점검·보수, 오나·스컴 및 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li> <li>4.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li> <li>5. 가축분뇨의 배관은 막힘·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li> <li>6.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i> <li>7.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li>8.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상 가축분뇨의 저장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b>비가림시설이나 가축분뇨 유출방지턱</b>을 설치하여야 하고, 배출시설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li> </ol>	-	-	100만원

구 분 (법조항)	준 수 사 항	위반시 조치사항		
		벌 칙 (징역/벌금)	행정명령 (1차위반시)	과태료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설치 기준 (제12조의2)	<p>&lt;생물학적,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강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li> </ul> <p>&lt;자원화방법(퇴비화)&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통발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li> <li>2.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최종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li> </ol> <p>&lt;자원화방법(액비화)&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6개월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li> </ol>	-	-	100만원

구 분 (법조항)	준 수 사 항	위반시 조치사항																
		벌 칙 (징역/벌금)	행정명령 (1차위반시)	과태료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설치 기준 (제12조의2)	2.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물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단위 : m <sup>2</sup> /마리)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초 지</th> <th colspan="2">농 경 지</th> </tr> <tr> <th>논</th> <th>밭·과수원</th> </tr> </thead> <tbody> <tr> <td>젖소</td> <td>1,330 이상</td> <td>2,550 이상</td> <td>1,650 이상</td> </tr> <tr> <td>돼지</td> <td>140 이상</td> <td>260 이상</td> <td>170 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초 지	농 경 지		논	밭·과수원	젖소	1,330 이상	2,550 이상	1,650 이상	돼지	140 이상	260 이상	170 이상			100만원
구 분	초 지			농 경 지														
		논	밭·과수원															
젖소	1,330 이상	2,550 이상	1,650 이상															
돼지	140 이상	260 이상	170 이상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및 처리 시설 관리 (제17조 제1항)	<b>&lt;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gt;</b>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다만, 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 제외)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5년/5천만원 (무허가)  2년/2천만원 (허가)  1년/1천만원 (신고)	1,2호 경고 (1차) 허가취소 (2차)	개선명령														

구 분 (법조항)	준 수 사 항	위반시 조치사항		
		벌 칙 (징역/벌금)	행정명령 (1차위반시)	과태료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및 처리 시설 관리 (제17조 제1항)	4.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경우 제외)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 액비 살포 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腐熟)시켜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 됨 -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 금지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 사용량 절감 및 액비를 계속 쓴 데에 대한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퇴비,액비를 비료로 사용치 않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배출	2년/2천만원 (허가)  개선명령  1년/1천만원 (신고)		00만원-

구 분 (법조항)	준 수 사 항	위반시 조치사항		
		벌 칙 (장역/벌금)	행정명령 (1차위반시)	과태료
비 정 상 운영신고 (제17조 제2항)	<p>&lt;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li> <li>단전·단수 및 천재지변·화재 등 사유로 정상운영할 수 없는 경우</li> </ol>	-	-	-
가 축 분 노 처리시설 관리기준 (제17조 제3항)	<p>&lt;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기준&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li> <li>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할 것,</li> <li>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경우 관리일지에 가동시간, 가축분뇨배출량, 시설운영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li> <li>방류수 수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그 내용을 3년간 보관(자원화시설의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 1회 이상/3월</li> <li>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자 : 1회 이상/6월</li> </ul> </li> <li>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 퇴비 또는 액체상의 비료를 생산하거나 처분할 때 마다 「퇴비 및 액비관리대장」에 생산량과 처분내용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1년 동안 보관</li> </ol>	-	개선명령	100만원

구 분 (법조항)	준 수 사 항	위반시 조치사항																																																	
		벌 칙 (장역/벌금)	행정명령 (1차위반시)	과태료																																															
가 축 분 노 처리시설 관리기준 (제17조 제3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 <li>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는 탈수 또는 퇴비화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신고자나 가축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li> </ol>	-	개선명령	100만원																																															
방 류 수 수질기준 (제13조)	<p>&lt;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gt; (단위 : mg/L)</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BOD</th> <th>SS</th> <th>T-N</th> <th>T-P</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특정 지역</td> <td>허가대상</td> <td>50 이하</td> <td>50 이하</td> <td>260 이하</td> <td>50 이하</td> </tr> <tr> <td>신고대상</td> <td>150 이하</td> <td>150 이하</td> <td>850이하</td> <td>200이하</td> </tr> <tr> <td rowspan="2">기타 지역</td> <td>허가대상</td> <td>150 이하</td> <td>150 이하</td> <td>850이하</td> <td>200이하</td> </tr> <tr> <td>신고대상</td> <td>350 이하</td> <td>350 이하</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방류수수질기준은 BOD 1,500mg/L 이하</p> <table border="1"> <thead> <tr> <th>축 종</th> <th>사육시설 규모</th> <th>축 종</th> <th>사육시설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돼지</td> <td>면적 140㎡ 미만</td> <td>닭·오리·양</td> <td>면적 500㎡ 미만</td> </tr> <tr> <td>소</td> <td>면적 200㎡ 미만</td> <td>사슴</td> <td>모든 사슴 사육시설</td> </tr> <tr> <td>말</td> <td>면적 200㎡ 미만</td> <td>개</td> <td>모든 개 사육시설</td> </tr> <tr> <td>젓소</td> <td>축사 면적 : 2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 600㎡ 미만</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BOD	SS	T-N	T-P	특정 지역	허가대상	50 이하	50 이하	260 이하	50 이하	신고대상	150 이하	150 이하	850이하	200이하	기타 지역	허가대상	150 이하	150 이하	850이하	200이하	신고대상	350 이하	350 이하	-	-	축 종	사육시설 규모	축 종	사육시설 규모	돼지	면적 140㎡ 미만	닭·오리·양	면적 500㎡ 미만	소	면적 200㎡ 미만	사슴	모든 사슴 사육시설	말	면적 200㎡ 미만	개	모든 개 사육시설	젓소	축사 면적 : 2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 600㎡ 미만			-	개선명령	1천만원 (허가) 500만원 (신고)
구 분	BOD	SS	T-N	T-P																																															
특정 지역	허가대상	50 이하	50 이하	260 이하	50 이하																																														
	신고대상	150 이하	150 이하	850이하	200이하																																														
기타 지역	허가대상	150 이하	150 이하	850이하	200이하																																														
	신고대상	350 이하	350 이하	-	-																																														
축 종	사육시설 규모	축 종	사육시설 규모																																																
돼지	면적 140㎡ 미만	닭·오리·양	면적 500㎡ 미만																																																
소	면적 200㎡ 미만	사슴	모든 사슴 사육시설																																																
말	면적 200㎡ 미만	개	모든 개 사육시설																																																
젓소	축사 면적 : 2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 600㎡ 미만																																																		
기 술 관 리 인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처리시설은 기술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퇴비화, 액비화시설에 의한 퇴비로 이용하는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 : 피고용인 또는 설치허가를 받은 자</li> </ul> </li> <li>준수사항 : 정상가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 등</li> </ul>	-	경고	100만원																																															